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218
----------	------------

제안년월일: 2021년 4월 22일
제 안 자: 환경수자원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례의 개정 취지에 맞게 목적 규정을 수정하고 자치구의 책무를 조례 입안의 원칙에 따라 삭제하며,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 주체를 ‘시장’으로 통일하는 등 전부개정조례안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조례의 목적을 개정 취지에 맞게 수정함(안 제1조)
- 자치구의 책무를 삭제하고 시와 자치구의 협력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공공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주체를 시장으로 통일함(안 제15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규정을 삭제함(안 부칙 제3조)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혁신적인 에너지”를 “에너지”로 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적극적으로 감축하여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방지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정의 실현, 시민의 건강·복지 증진 및”을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로 한다.

안 제2조제3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에너지 수요 관리 혁신을 통한 고효율”을 “고효율”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신·재생에너지, 효율 향상, 신기술 등의 융합으로”를 “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3. 시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 및 에너지 정의 실현
7. 참여·소통·분권형 에너지 체계 조성 및 시민의 안전한 삶 보장

안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립·시행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에너지 정보를 공유”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 참여 보장, 에너지 관련 정보 공유, 교육·홍보의 강화 및 연구·개발·조사 확대를 위해 노력”으로 한다.

- ① 시는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④ 시는 자치구가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안 제5조를 삭제하고, 안 제6조부터 제29조까지를 제5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한다.

안 제7조(종전의 안 제8조)제1항 중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를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기후변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온실가스 감축,”을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온실가스 감축 및”으로 한다.

안 제9조(종전의 안 제10조)제1항 중 “시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를 “시장은”으로 한다.

안 제10조(종전의 안 제11조)제3항 중 “있다. 다만”을 “있다.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안 제11조(종전의 안 제12조)제1항 중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를 “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활용 에너지”를 “미활용에너지”로 한다.

안 제12조(종전의 안 제13조)제5항 중 “제한”을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을 “냉난방온도관리건물”로 한다.

안 제13조(종전의 안 제14조)제3호 중 “제도”를 “제도 추진”으로 한다.

안 제14조(종전의 안 제15조)제2항 중 “시는”을 “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세부화한”을 “세분화된”으로 한다.

안 제15조(종전의 안 제16조)제1항 중 “이를”을 “이를 달성하도록”으로 한다.

안 제19조(종전의 안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공유재산 임대 등)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옥상 이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한다.

안 제20조(종전의 안 제21조) 중 “제20조 단서”를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안 제23조(종전의 안 제24조) 중 “시민 공감대에 기반한”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으로 한다.

안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적인 에너지 수요관리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확대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적극적으로 감축하여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방지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정의 실현, 시민의 건강·복지 증진 및 서울특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에너지 ----- -----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 -----.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2.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감축 3. 모든 시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 4.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을 통한 고효율 에너지 사회 구현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자립 강화 6. 신·재생에너지, 효율 향상, 신기술 등의 융합으로 신산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 7. 시민의 권한, 책임 공유 강화로 참여·소통·분권형 에너지 체계 조성 8. 기후재해 예방 및 에너지 생산, 소비과정에서의 안전 관리 강화로 시민의 안전한 삶 보장	제2조(기본이념) ----- -----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시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 및 에너지 정의 실현 4. 고효율 에너지 사회 구현 5. (개정안과 같음) 6. 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 7. 참여·소통·분권형 에너지 체계 조성 및 시민의 안전한 삶 보장 <삭 제>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적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시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에너지 정의”란 누구나 기본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누릴 권리와 이에 따른 사회환경비용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에너지 서비스의 편익과 비용이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배분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고 에너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3.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확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4.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5. “자발적 협약”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과 합리적인 이용을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이행하기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체결한 약속을 말한다.
6.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란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7. “에너지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8. “에너지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이 제한된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복지를 말한다.
9. “에너지공동체”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른 에너지공동체를 말한다.
-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다.

- 제4조(시의 책무)** ① 이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에너지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 ③ 시는 자치구 및 에너지공급자와 협력하여 모든 시민에게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지원하고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는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자치구·사업자·시민·시민단체 및 학계 등과 제휴·협력하여 연구·개발·조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시는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 제5조(자치구의 책무)** ① 자치구는 시의 에너지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치구 에너

-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 추진함에 있어 시민 참여 보장, 에너지 관련 정보 공유, 교육·홍보의 강화 및 연구·개발·조사 확대를 위해 노력-----.
- ③ (개정안과 같음)

<삭 제>

<삭 제>

- ④ 시는 자치구가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삭 제>

<p><u>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u></p> <p>② 자치구는 시의 에너지 시책에 참여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 자치구는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사업자의 책무) (개정안 제6조와 같음)</p> <p>①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자는 시·자치구 등에서 실시하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p>
<p>제7조(시민의 권리) ① 시민은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p> <p>② 시민은 시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 수립과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p> <p>③ 시민은 에너지 정보에 대한 알 권리와 에너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p> <p>④ 시민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 생산한 전력의 판매 또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참여 등의 권리 를 가진다.</p>	<p>제6조(시민의 권리) (개정안 제7조와 같음)</p>
<p>제8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u>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 시민은 시 또는 자치구가 추진하는 <u>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전환</u> 등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p>	<p>제7조(시민의 책무) ① --- <u>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기후변화 등</u> ---.</p> <p>② --- <u>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온실가스 감축 및</u> ---.</p>
제2장 에너지계획 수립 등	제2장 에너지계획 수립 등
<p>제9조(에너지계획)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확대 등을 위하여 「에너지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에너지 수급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p>제8조(에너지계획) (개정안 제9조와 같음)</p>

4.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교육·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미활용에너지원의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시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추진사항
2.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에너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에너지 사업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사업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의견 수렴 등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사용 및 대부요율 산정에 관한 사항
 6. 에너지합리화를 위한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되, 위원장은 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하는 사람 1명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후환경본부장, 에너지 업무와 관련된 실·본부·국장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 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 사람
-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시장은

②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있다. 다만 -----

<p>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채석위원회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p> <p>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⑥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 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④ (개정안과 같음)</p> <p>⑤ (개정안과 같음)</p> <p>⑥ ----- ----- 범위에서 -----.</p>
<h3>제3장 에너지 수요관리</h3> <p>제12조(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p>	<h3>제3장 에너지 수요관리</h3> <p>제11조(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① 시장은 -----</p> <p>-----.</p> <p>② ----- ----- 미활용에너지-----.</p> <p>③ (개정안과 같음)</p>
<p>제13조(건물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① 시장은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소비총량 설정·관리 및 인센티브 등의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개선사업 투자비 융자 지원 2. 건축물의 에너지진단 활성화를 위한 진단사업 지원 3.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기준 설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현황 조사 등 <p>③ 시장은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p> <p>⑤ 시장은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온도관리기준 및 점검방법 등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의2를 따른다.</p> <p>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대상 건물의 소유자에게 에너지 관리자 지정 및 건축물의 냉난방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자율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⑦ 시장은 제5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제한건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에너지 사용량을 공개할 수 있다.</p>	<p>제12조(건물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개정안과 같음)</p> <p>⑤ ----- ----- 관리-----.</p> <p>⑥ (개정안과 같음)</p> <p>⑦ ----- 냉난방온도관리건물-----.</p>

<p>제14조(수송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시장은 수송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제13조(수송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의 확대와 교통수요 관리를 위한 제반 정책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 대책 3. 승용차 사용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u>제도</u>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설치 확충 5. 그 밖에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교통대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 <u>제도 추진</u> ----- 4.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p>제15조(공공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① 시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p>	<p>제14조(공공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① (개정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에너지소비총량제에 따른 절약 목표 설정·관리 2. 공공 건축물의 신축이나 시설 개보수시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녹색 제품의 구매사용 3.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 절약 사업 추진 4.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및 개선사업 추진 	<p>② <u>시는</u> 에너지절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사업자가 조달한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부문에 에너지절약형설비(LED조명 등) 등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절약된 에너지비용을 외부사업자에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제2항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내조명기기는 LED 제품을,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속기관의 건물에너지진단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보다 <u>세부화한</u>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p>② <u>시장은</u> ----- ----- ----- ----- -----. ③ (개정안과 같음)</p>
<p>제16조(에너지원단위 설정) ① 시장은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및 건축물(신축</p>	<p>제15조(에너지원단위 설정) ① ----- ----- -----.</p>

및 기존 건축물 포함) 용도별로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사용목표량을 정하여 이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품 및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제1항에 따른다.

----- 이를 달성하도록 -----.

② (개정안과 같음)

제17조(에너지사용 제한) 시장은 국내외 에너지 사용

의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업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위생 접객업소 및 그 밖의 에너지사용시설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2. 차량 등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3. 에너지사용의 시기 및 방법의 제한
 4. 그 밖에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

제4장 신·재상에너지 및 대형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확대

제18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①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 ① 시장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확대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의 특성에 적합한 미활용에너지

③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의 지정요건이나 절차는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에너지사용 제한) (개정안 제17조와 같음)

[View Details](#) | [Edit](#) | [Delete](#)

제4장 신·재상에너지 및 대형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확대

제4장 신·자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확대

(개정안 제18조와 같음)

<p>제20조(공유재산 임대 등)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옥상 이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한다.</p>	<p>제19조(공유재산 임대 등)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옥상 이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한다.</p>
<p>제21조(의견청취) 시장은 제20조 단서에 따른 사용 및 대부요율을 산정 공고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용 및 대부요율을 인하·동결하거나 전년도(해당 대부요율이 적용되는 그 해의 직전 년도를 말한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로 인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20조(의견청취) ----- 제19조제2항 ----- ----- ----- ----- ----- -----.</p>
<p>제22조(의회동의)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 명의의 철거비용부담화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거나 철거비용을 공탁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p>	<p>제21조(의회동의) (개정안 제22조와 같음)</p>
<p>제5장 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시민참여·소통강화, 지원 등</p> <p>제23조(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녹색 일자리 창출) ① 시장은 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차 산업혁명 연계 융·복합 녹색기술 발굴 및 육성 2. 에너지 신산업 핵심 기술 발굴 및 육성 3. 에너지 서비스 분야의 신산업 창출 4. 그 밖에 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색산업 분야의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등 창업지원 및 역량 강화 교육 2. 녹색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자문서비스 지원 3. 녹색산업 분야 우수기업, 제품 및 일자리 정보망 구축·운영 4. 녹색 신기술 사업화 및 산학연 간 협력 	<p>제5장 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시민참여·소통강화, 지원 등</p> <p>제22조(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녹색 일자리 창출) (개정안 제23조와 같음)</p>

<p>제24조(시민참여 및 소통 강화) ① 시장은 에너지 정책 수립과 사업 시행과정에서 에너지 수요·공급자로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주민참여·이익공유형 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 참여가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자치구, 시민 등과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여 시민 공감대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여 갈등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정보를 시민, 시민단체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에너지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3조(시민참여 및 소통 강화)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p> <p>④ (개정안과 같음)</p>
<p>제25조(에너지 교육, 홍보 및 포상) ① 시장은 시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이용·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매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의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p>	<p>제24조(에너지 교육, 홍보 및 포상) (개정안 제25조와 같음)</p>
<p>제26조(에너지백서) ① 시장은 에너지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에너지 백서를 매년마다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 현황 3.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현황 4.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등 에너지 시책 추진 현황 및 전망 	<p>제25조(에너지백서) (개정안 제26조와 같음)</p>
<p>제27조(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에너지 공급 지원에 관한 사업 2.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3.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4. 사회문제 해결형 에너지 복지사업 발굴 및 육성 5.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6. 그 밖에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에너지복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취약계층 등의 주거환경,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에너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절약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26조(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개정안 제27조와 같음)</p>

<p>제28조(에너지 시설 안전관리) ① 시장은 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다음 각 호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열수송관 등 시설별 전주기 안전관리 2. 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전기 안전관리 3. 고압·LP가스·도시가스 안전관리 <p>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에너지시설 담당 기관에 장기사용시설 진단·관리·교체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수 있다.</p>	<p>제27조(에너지 시설 안전관리) (개정안 제28조와 같음)</p>
<p>제29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등의 개발·이용·보급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등의 개발·이용·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제공이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등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한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 2. 주택형 태양광 설비 3. 건물형 태양광 설비 4. 그 밖의 시장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 <p>④ 시장은 고효율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집단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후변화기금으로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p> <p>⑥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p>	<p>제28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등) (개정안 제29조와 같음)</p>
부칙	부칙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p>
<p>제2조(영구시설물 축조 사전 승인에 관한 경과규정) 2019년 5월 16일 이전에 축조한 영구시설물은 이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2조(영구시설물 축조 사전 승인에 관한 경과규정) (개정안과 같음)</p>
<p>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규정) 제11조 제2항의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삭제></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수요관리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확대 등을 통하여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2.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감축
3. 시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 및 에너지 정의 실현
4. 고효율 에너지 사회 구현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자립 강화
6. 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
7. 참여·소통·분권형 에너지 체계 조성 및 시민의 안전한 삶 보장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적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시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체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에너지 정의”란 누구나 기본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누릴 권리와 이에 따른 사회환경비용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에너지 서비스의 편익과 비용이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배분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고 에너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3.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확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5. “자발적 협약”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과 합리적인 이용을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이행하기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체결한 약속을 말한다.
6.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란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7. “에너지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8. “에너지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이 제한된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복지를 말한다.

9. “에너지공동체”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른 에너지공동체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따른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참여 보장, 에너지 관련 정보 공유, 교육·홍보의 강화 및 연구·개발·조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자치구 및 에너지공급자와 협력하여 모든 시민에게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지원하고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는 자치구가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자치구 등에서 실시하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 ① 시민은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 수립과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③ 시민은 에너지 정보에 대한 알 권리와 에너지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④ 시민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 생산한 전력의 판매 또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참여 등의 권리를 가진다.

- 제7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기후변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민은 시 또는 자치구가 추진하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전환 등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에너지계획 수립 등

- 제8조(에너지계획)**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확대 등을 위하여 「에너지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교육·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미활용에너지지원의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추진사항

2.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에너지 절감 및 생산, 건물의 이용 효율화 등의 에너지 계획과 이행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에너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에너지 사업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사업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의견 수렴 등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사용 및 대부요율 산정에 관한 사항

6. 에너지합리화를 위한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하는 사람 1명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후환경본부장, 에너지 업무와 관련된 실·본부·국장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 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의견 및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에너지 수요관리

제11조(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①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에너지의 자원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2조(건물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① 시장은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소비총량 설정·관리 및 인센티브 등의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개선사업 투자비 융자 지원
2. 건축물의 에너지진단 활성화를 위한 진단사업 지원
3.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기준 설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현황 조사 등

③ 시장은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냉난방온도를 관리하는 건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온도관리기준 및 점검방법 등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의2를 따른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대상 건물의 소유자에게 에너지 관리자 지정 및 건축물의 냉난방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자율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5항에 따른 냉난방온도관리건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에너지사용량을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수송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시장은 수송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의 확대와 교통수요 관리를 위한 제반 정책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 대책
3. 승용차 사용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추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설치 확충
5. 그 밖에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교통대책

제14조(공공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① 시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에너지소비총량제에 따른 절약 목표 설정·관리
 2. 공공 건축물의 신축이나 시설 개보수시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사용
 3.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 절약 사업 추진
 4.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및 개선사업 추진
- ② 시장은 에너지절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사업자가 조달한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부문에 에너지절약형설비(LED조명 등) 등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절약된 에너지비용을 외부사업자에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내조명기기는 LED 제품을,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속기관의 건물에너지진단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5조(에너지원단위 설정) ① 시장은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및 건축물(신축 및 기존 건축물 포함) 용도별로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사용목표량을 정하여 이를 달성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품 및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제1항에 따른다.

제16조(에너지사용 제한) 시장은 국내외 에너지 사용의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업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다.

1. 위생 접객업소 및 그 밖의 에너지사용시설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2. 차량 등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3. 에너지사용의 시기 및 방법의 제한
4. 그 밖에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

제4장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확대

제17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① 시장은 「신에너

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확대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 에너지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의 특성에 적합한 미활용에너지

③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의 지정요건이나 절차는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공유재산 임대 등)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옥상 이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한다.

제20조(의견청취) 시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용 및 대부요율을 산정 공고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용 및 대부요율을 인하·동결하거나 전년도(해당 대부요율이 적용되는 그 해의 직전 년도를 말한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로 인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회동의)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 명의의 철거비용부담 확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거나 철거비용을 공탁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5장 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시민참여·소통강화, 지원 등

제22조(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녹색 일자리 창출) ① 시장은 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연계 융·복합 녹색기술 발굴 및 육성
2. 에너지 신산업 핵심 기술 발굴 및 육성
3. 에너지 서비스 분야의 신산업 창출
4. 그 밖에 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녹색산업 분야의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등 창업지원 및 역량 강화 교육

2. 녹색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자문서비스 지원
3. 녹색산업 분야 우수기업, 제품 및 일자리 정보망 구축·운영
4. 녹색 신기술 사업화 및 산학연 간 협력

제23조(시민참여 및 소통 강화) ① 시장은 에너지 정책 수립과 사업 시행과정에서 에너지 수요·공급자로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주민참여·이익공유형 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참여가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자치구, 시민 등과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여 갈등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정보를 시민, 시민단체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에너지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에너지 교육, 홍보 및 포상) ① 시장은 시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이용·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의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에너지백서) ① 시장은 에너지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에너지 백서를 매년마다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 현황
3.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현황
4.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등 에너지 시책 추진 현황 및 전망

제26조(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 공급 지원에 관한 사업
2.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3.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4. 사회문제 해결형 에너지 복지사업 발굴 및 육성
5.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6. 그 밖에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에너지복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취약계층 등 의 주거환경,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에너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절약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에너지 시설 안전관리) ① 시장은 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다음 각 호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열수송관 등 시설별 전주기 안전관리

2. 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전기 안전관리

3. 고압·LP가스·도시가스 안전관리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에너지시설 담당기관에 장기사용시설 진단·관리·교체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신·재생 에너지 등의 개발·이용·보급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등의 개발·이용·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제공이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등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한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

2. 주택형 태양광 설비

3. 건물형 태양광 설비

4. 그 밖의 시장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

④ 시장은 고효율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집단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후변화기금으로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구시설물 축조 사전 승인에 관한 경과규정) 2019년 5월 16일 이전에 축조한 영구시설물을 이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